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회계규정」 제42조(지출원인행위)¹⁾,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²⁾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³⁾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1)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3)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지출품의)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⁴⁾, 제21조(기타소득)⁵⁾,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의거 협회는 심판 등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제공하여 인력을 사용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각종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 되었다.

가. 지출품의 미이행 및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집행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나, 각종 사업에서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자료(계약서 등)를 증빙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련 법령, 조례 및

4)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마. “생략”

바. 기타소득

5)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26. “생략”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처리에 관한 관리·감독하는 등의 내부 통제가 되어 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인건비 세금 미공제(도교육청 예산)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2년도 ●●●●●을 개최하면서 심판 및 운영요원 수당(***천원)을 지출하면서 기타소득세 분을 공제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집행을 위해 회계 담당직원에게 관련 법률(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를 비롯한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재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정산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재정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회장,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